

2024년 「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」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연계신청 안내문

1. 프로그램 목적

- 지역 내 학교 및 유관기관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아성장을 도모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행동 변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2. 프로그램 운영안내

- 일 정 : 2024년 5월 1일(수) ~ 11월 29일(금) 중
- 장 소 : 시흥시 관내 신청기관 및 신청학교 내 공간
- 연계대상 : 시흥시 관내 초·중학교 또는 유관기관 총 1개소
- 참 여 자 : 초등 4학년~중등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소년 총 15명

※ 연계신청 전,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최소인원 충족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.

※ 사업운영 특성상 최소인원 대비 실제 참여모집인원이 4명 이상 미달일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(단, 참여자 사정으로 인한 당일불참의 경우 예외)

예) 신청서 내 참여예상인원 15명 기재, 실제 모집인원 11명

- 진행시간 : 총 5회, 회기별 1.5시간 ~ 2시간
- 진행방법 : 연계선정 기관 내 공간에서 사업담당자 방문운영

※ 선정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청소년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사업담당자에 제안 가능

※ 프로그램 효과성 보장을 위해 1그룹 당 2회기 이상 진행 필수

예) 1. A그룹 총 5회기 모두 진행

2. A그룹 2회기, B그룹 3회기 또는 A그룹 3회기, B그룹 2회기 진행

3. A그룹 2회기, B그룹 2회기, A·B그룹 1회기

• 내 용

- 프로그램 진행강사 및 재료 투입 지원
-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및 소통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서 작성
- ※ 업무 협조기간을 첫 프로그램 운영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
(양측 기관 사정에 따른 진행일정 변경 또는 기타 서류적 협조 필요 대비)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4. 03. 05.(화) ~ 2024. 03. 29.(금) 23:59
- 신청방법
 - [첨부2] 연계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(shfc@shfc.kr) 제출
 - ※이메일 제출 시, 제목에 ‘청소년 집단 프로그램(신청기관명)’ 으로 작성하여 제출
 - 희망하는 프로그램 주제 1개를 필수 기재(세부내용 추후 조율 가능)
 - ※ 2p 세부프로그램 내용(안) 참조하여 택 1 또는 그 외 희망주제 기재가능
 - ※ 1)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(이름, 나이, 성별, 소속 등) 제공이 가능한 기관, 2) 프로그램 진행공간 확보 가능한 기관, 3) 진행내용 및 인원을 충족하는 기관을 우선 심사

4. 연계선정기관 발표

- **2024년 4월 8일(월) 14:00** 시흥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선정기관으로 유선 공지 예정
 - ※ 24년 ‘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’ 사업 중 부모교육·가족문화 프로그램과 중복선정 불가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 - ※ 미선정 기관에 대하여 별도 안내가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문 의 :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팀 (031-432-7994)

5. 세부프로그램 내용(안)

프로그램 주제	활용 도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청소년 스트레스 및 감정관리- 우울감 및 무기력 해소와 자아탐색- 학교폭력예방, 청소년 자살예방- 사회성 향상 및 또래관계 개선- 자기발견을 통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- 진로탐색 프로그램, 학습능력 향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미술치료• 놀이치료• 사진심리치료• 푸드아트테라피• 컬러테라피• 에니어그램

※ 그 외 본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주제로 신청 가능

6. FAQ

Q1. 참여자의 기본인적 사항 범위가 어디인가요? 꼭 제공해야 하나요?

A. ‘이름, 나이, 성별, 필요시 소속 및 연락처’ 입니다.

본 사업에서 수집된 기본인적 사항은 국가 보조금 사용현황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며,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원 및 참여가 불가합니다.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종료 후 위 사유 외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,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간 3년 경과 후 파기됩니다.(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 등에 의거)